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

2022학년도 전기 교원자격취득 예정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대상자: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(졸업가능자만 제출)
⇒ **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** 확인 필수
(확인방법: 종합정보시스템-수업업무-교직업무-교직사정안내)
2. 접수기간: 2022. 12. 1.(목) ~ 12. 23.(금)
3. 접수방법: 종합정보시스템 → 수업업무 → 교직업무 → 무시험검정신청
4.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: 2022. 12. 23.(금) 17시까지 소속학과(주전공) 사무실
 - 가. **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(반드시 본인 서명하여 제출)**
 - 나.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
 - 1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**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1부** [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관련 안내] 참조
 - 2) **성범죄경력조회**: 무시험검정원서 하단 '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' 동의/서명하여 제출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 - 다. 영양사면허증 사본(원본 대조필,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) 1부.
5. 기타 안내
 - 가. 인적사항 정정 관련 안내
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기재된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)과 실제 인적사항이 상이할 경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.
 - 1)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: 주민등록등본 1부
 - 2) 주민등록번호 정정: 주민등록초본 1부
6. 유의사항
 - 가. 교직 복수 중이라도 원서는 주전공에만 제출합니다.
 - 나. 기존에 서류를 제출했던 학생(현재 졸업연기중인자 등)도 반드시 다시 출력하여 제출합니다.
⇒ 2022. 8월 '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'를 제출한 학생은 재사용 가능함(학사지원 팀에 개별 문의)
⇒ '7호기준' 대상자(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) 포함
 - 다. 졸업연기예정자, 초과학기희망자(졸업학점 부족)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.
★ 졸업(교직)학점 부족한 학생은 **겨울계절수업 가능 여부 문의**
 - 라. 교직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. 단, <교직 포기원>을 반드시 제출(사범대 행정실(5126))
 - 마. 졸업학점을 다 채웠으나 교직 필수과목/학점 미이수자는 반드시 졸업논문/시험 이수 후 졸업연기신청 해야 합니다.
★ 졸업논문/시험을 미이수하여 수료자가 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함.
 - 바. 식품영양학과의 경우, 영양사면허증 취득 후 발급 가능합니다.
⇒ 단, 영양사면허증 취득 전 조건부(영양사면허증명서 제출)합격 후 30일 이내 면허증 제출시 가능

[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관련 안내]

■ 제출서류: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

⇒ 진단서에 반드시 대마·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.

⇒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‘양성’반응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판단하는 의사의 소견을 검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되어야함

■ 서류 유효기간: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·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

⇒ (예시)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'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, '22년 1월~'23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·발급된 검진결과 인정 가능함

■ 검진종류(방법)

- ‘**TBPE검사**’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간이 검사(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)
- 위 법령에 따른 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며, 일반적인 요검사가 아닌 **약품소변검사(TBPE)임** ※ **종합건강검진 아님 주의**

■ 검진 기관 및 비용(선택 사항)

[권장] - 검진 기관 : 한국건강관리협회(전국)_붙임 파일 참고
- 검사 비용: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,000원 / 단독검사시 6,000원

- 검진 기관 : **일반의료기관**(가정의학과, 정신의학과, 내과, 의원 등)
- 검사 비용: 7,000원 ~25,000원

- 국가건강검진(격년 실시)시 해당 검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, 미 실시자는 단독 검사로 진행
- 진단서로 발급시 추가비용(1만원) 발생함
- 방문 시 신분증 지참
-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(진단서)발급 소요기간: 2~3일 방문 전 사전 확인 및 예약 필요
- ※ 건강검진(약품소변검사)진단서는 검사 비용이 발생하므로, 반드시 교직사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(상세문의는 학사지원팀 053-850-5133)

- 붙임 1. 교육부 안내자료(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별 관련 안내) 1부.
2. 교육부 안내자료(리플렛) 1부. 끝.

2022. 11.
교 무 처 장